

## 大田直轄市地方建設技術審議案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審號	218
----------	-----

提出年月日 : 1993. 1. .  
提 出 者 : 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이改正('92.12.26 令第13,790號)됨에 따라 大田直轄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運營條例중 관련 條項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 가. 地方建設技術審議 委員會의 設計 審議對象을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5億원以上 100億원 未滿인 工事에서 10億원이상 200億원未滿인 工事로 上向 調整함으로써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를 活性化하도록 함(案 第9條)
- 나. 建設技術의 細分化에 따른 專門分野別 審議要員의 不足을 解消하고 보다 專門的으로 審議하기 위하여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委員 數量 現行 50人以內에서 80人以內로 增員함.(案 第2條)

### 3. 參考事項(關聯法規) : 別添

### ※ 參考事項(關聯法規)

#### 가. 建設技術管理法

第5條 (建設技術審議委員會) ①建設技術의 振興 · 開發 · 活用과 建設工事 設計의 妥當性 및 施工技術의 적정성의 確保등 建設技術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部에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以下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서울特別市 · 直轄市 및 道에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 (以下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구성 · 機能 및 運營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地方委員會의 구성 · 機能 및 運營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서울特別市 · 直轄市 · 道의 條例로 정한다.

第23條 (建設工事設計등의 審議) ①國家 ·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團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工事로써 一定規模 以上的 工事에 있어서는 設計의 妥當性과 構造物의 安全 및 工事施行의 적정성에 대하여 中央委員會 또는 地方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다만, 文化財 保護法에 의한 指定文化財 및 假指定文化財의 修理 · 復元 · 整備工事 및 大統領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歷史性이 있거나 公益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고 認定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規模의 施設物등에 관한 建設工事を 許可하는 行政聯關의 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당해 建設工事의 設計 및 施工등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中央委員會 또는 地方委員會에 審議를 要請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받은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그 審議結果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 또는 地方委員會의 審議對象 및 範圍 其他 審議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나.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

第19條 (地方委員會의 구성 및 機能등) ①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以下 “地方委員會”라 한다)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 1人을 包含한 80人(서울特別市의 境遇는 100人)以內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地方委員會의 委員長은 서울特別市 · 直轄市 또는 道(以下 “市 · 道”라 한다)의 3級 以  
上 公務員中에서 市 · 道知事が 指名하는 者가, 副委員長은 市 · 道의 建設關係業務를  
擔當하는 局長이, 委員은 市 · 道의 5級以上 公務員 및 建設工事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에 의하여 市 · 道知事が 任命 또는 委嘱하는 者가 된  
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은 12人을 超過할 수 없다.

③地方委員會는 다음 각호의 事項을 審議한다.

1. 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建設工事의 設計의 妥當性 · 構造  
物의 安全 및 工事施行의 적정성에 관한 事項
2.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豫算會計法施行令 第95條  
의 3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新로운 技術 · 工法등의 範圍와 限界에 대하여 提起된 이의에  
관한 事項
3. 其他 市 · 道知事が 附議하는 事項

④第11條 · 第12條 · 第15條 및 第17條의 規定은 地方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9條 (設計등의 審議對象工事) ①法 第2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議  
審議對象인 建設工事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國家가 施行하는 建設工事로서 總工事費가 100億원以上인 工事
2. (削除)
3. 地方自治團體 및 政府 投資機關이 施行하는 建設工事로서 總工事費가 200億원 以上  
인 工事
4. 法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로서 總 工事費가 200億원 以上이고  
당해 建設工事を 許可한 行政機關(以下 “許可官署”라 한다)의 長이 要請하는 工事
5. 第1號내지 第4號에 該當하는 建設工事의 設計를 變更하는 境遇에 그 設計變更에 따  
른 建設工事로서 당해 工事金額이 10億원 以上이고, 建設工事を 發注하는 國家 · 地方  
自治團體 · 政府投資機關(以下 “工事發注官署”라 한다)의 長 또는 許可官署의 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要請하는 工事

6. 다음 각목의 1에 該當하는 建設工事로서 工事 發注官署의 長 또는 許可官署의 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要請하는 工事

가. 길이 100미터以上의 橋梁工事

나. 터널 · 지하철 · 댐등의 特殊한 構造物 工事

다. 막구조 · 현수구조등 特殊한 構造로 建築하는 建築物 工事

라. 國內에서의 施工實績이 없는 新로운 技術 · 工法에 의한 工事

②法 第2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委員會의 審議對象인 建設工事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建設工事로서 總工事費가 10億원以上 200億원未滿인 建設工事.

2. 法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로서 總工事費가 10億원以上 200億원未滿이고 당해 建設工事의 許可官署의 長이 要請하는 工事.

3.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建設工事의 設計를 變更하는 경우에 그 設計 變更에 따른 建設工事로서 당해 工事金額이 1億원(서울特別市의 경우에는 2億 원)以上이고 工事 發注官署의 長 또는 許可官署의 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要請하는 工事

③法 第23條第1項 단서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라 함은 다음각호의 建設工事を 말한다.

1. 特別委員會에 附議된 建設工事

2. 戰時 · 事變 또는 基地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下에서 施行하는 建設工事

3. 災害의 緊急復舊를 위한 建設工事

4. 建築士法 施行令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標準設計圖書에 의하여 施工하는 建設工事

5. 國家保安에 關聯된 工事 또는 內容이 單純 · 反復적인 工事로서 建設部令이 정하는 建設工事

대전직할시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 1항중 “50인 이내”를 “80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단서중 “7인”을 “12인”으로 한다.

제 9조제 1호 중 “5억 원이상 100억 원미만의 건설공사”를 “10억 원이상 200억 원미만의 건설공사”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2호 중 “50억 원이상 100억 원미만”을 “100억 원이상 200억 원미만”으로 하며, 동조 제3호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5천만원이상인 공사”를 “1억원이상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 2호 중 “제95조의 3제3항”을 “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u>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u> 하는 경우의 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u>5천만원 이상인</u>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건설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u>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u> 다.	3. <u>제1호 또는 제2호</u> ----- ----- ----- <u>1억원 이상이고 공사발주</u> <u>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u> <u>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한다.</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범위) (생략)	제10조(심의범위)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 ----- <u>제112조</u> <u>제5항</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大田直轄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3. 2. 20

內　務　委　員　會

大田直轄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3年 2月 20日  
内務委員會

I. 審查經過

1. 提案日字 妥 提案者 : 1993年 1月 26日 大田直轄市長
2. 回 附 日 字 : 1993年 1月 27日
3. 上 程 日 字 :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5次 内務委員會 (1993. 2. 18)  
上程, 審議, 議決

II.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管理室長)

1. 提案理由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의 改正 ('92. 12. 26 令 第13790號)에 따  
라 大田直轄市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 관련 條項을  
整備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 가.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設計 審議對象을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5億원 以上 100億원 未滿인 工事에서 10億원 以上 200億원 未滿인 工事로 上向 調整함으로써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를 活性化 하도록 함. (案 第9條)
- 나. 建設技術의 細分化에 따른 專門分野別 審議委員의 不足을 解消하고 보다 專門的으로 審議하기 위하여 地方建設技術 審議委員會의 審議委員數를 現行 50人以內에서 80人以內로 增員함. (案 第2條)

## III. 專門委員 檢討要旨(專門委員 鄭泰益)

本 案件은 92年 12月 26日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 第19條 및 第39條가 一部 改正됨에 따라 大田直轄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 關聯 條項을 一部 整備하려는 內容임.

本 條例는 建設技術管理法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根據를 두고 그동안 市가 推進하는 一定規模 以上的 建設工事 設計 妥當性과 構造物의 安全性, 工事施行의 適正性등 各種 建設工事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運營되고 있음.

改正案의 主要內容으로는

첫째, 案 第2條의 委員會 構成範圍를 現行 50人以內에서 80人以內로 하고, 委員中 公務員의 數는 7人을 超過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12人을 超過할수 없도록 하여 全體的인 委員會 構成人員을 上向 調整하였음.

둘째, 案 第9條 第1號의 建設技術審議對象에서 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建設工事 範圍를 “5億원 以上 100億원 未滿”에서 “10億원

以上 200億원 未滿”으로 上向 調整하였고, 同條 第2號에서 自治團體外의 者가 施行하는 自治團體許可 建設工事中 審議要請範圍

가 總工事費 “50億원 以上 100億원 未滿”인 것을 “100億원 以上 200億원 未滿”으로 調整하였음.

그리고 同條 第3號의 建設工事 設計變更에 있어서, 당해 設計變更 金額을 現行 “5千萬원 以上”에서 “1億원 以上”으로 上向 調整하였음.

本 案件은 現在 各種 建設工事의 大型化 및 地方化 趨勢에 따라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對象 工事規模를 適正水準으로

上向 調整하고, 이를 審議하는 委員의 數를 늘려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建設工事에 보다 專門性을 確保토록 하자는 것이며,

大型工事 審議의 地方自治權 確保와 建設技術의 質的 向上 側面에서 취해진 措置라 보겠음.

그러나 委員會 構成에 있어서 現行 50人 以內를 80人 以內로 늘리는 것은 關係法 施行令 改正에 따른 불가피한 條例 整備라

하겠으나, 審議委員 增員이 곧 設計의 妥當性, 構造物의 安全性,

工事施行의 適正性等 審議 機能向上의 最善策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本 條例 改正에 의한 審議委員會의 構成은 自體實情에 맞게  
合理的으로 運營의 ulla를 살려 나가야 할 것으로 料됨.

#### IV. 討論要旨：省略

#### V. 質疑 및 答辯要旨

質疑要旨	答辯要旨
○ 審議委員의 50人 以上 必要性	○ 實際運營上에 實情에 맞게 調整할 것임.
○ 200億以上 建設工事의 建設技術審議는	○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
○ 200億以上의 大型工事도 地方自治權 確保側面에서 地方審議를 받을수 없는지	○ 專門的인 技術上의 問題로 200億以上 大型工事는 中央의 審議를 거쳐야 함.

#### VI. 審查結果：原案 可決

#### VII.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